

제877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월정로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
- 심 사 일 : 2013. 9.10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60,000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후 80일
 - 사업규모
 - 화곡동 361-1 ~360-17번지간 1.5×1.2 L=100m
 - 화곡동 360-17~357-25번지간 3.0×2.0 L=340m
 - 화곡동 938-18~935-19번지간 1.8×1.5 L=230m

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u>미대상</u>	20년 이상 노후된 하수암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하수암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역시행 필요.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[용역비(전체)조정: 60,000천원 → 45,188천원 (감14,812천원, 용역비 대비 -24.6%)]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인건비 : 의견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경비 조정 - 현장체재비 조정 : 20,000원 적용(공무원 여비규정 준용) - 차량운행비 적용제외 : 100,600원 → 0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밀안전진단용역 손해배상보험료 : 340천원(추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설계 검토 및 별도시행 (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, 2011.7.8) - 실시설계비 제외 : -13,654천원 - 손해배상보험료(실시설계분) 제외 : -143천원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면 중요인의 관리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책 적정성	-